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 A

검 사 정연우(기소), 김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명호(국선)

판 결 선 고 2026.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인 '스레드(Thread)'에서 ID 'B'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1세)은 ID 'D'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스트바 유



홍접객원을 소재로 소설을 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5. 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스레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니가 입으로 글로 남창인거 체크서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스레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헛바닥 닳도록 밀구멍훑아서 유치하게 차 자랑? 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의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동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을 전제로 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경모 _____